

스위스신문평의회

I. 스위스 언론현황

스위스는 23 개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서 1848 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에 따라 각 주가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다. 스위스는 1648 년 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851 년에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스위스는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등을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65%가 독일어를, 18%가 불어를, 12%가 이태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민의 문자해독률은 99%에 달한다.

스위스에는 1894 년 베른에서 설립되어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정보를 공급하는 스위스 통신사(Swiss News Agency: SNA)가 있다. 이 통신사는 40 개 주요 신문사가 공동소유한다. SNA 외에 개인소유 통신사인 스위스 폴리터컬프레스 에이전시(Swiss Political Press Agency)가 있으며, 기타 슈바이처 포일레톤 디스트(Schweizer Feuilleton Dienst)와 세르비스드 프레스 스위스(Service do Press Suisse)라는 소규모의 개인 통신사가 있다.

스위스 방송은 스위스 국영방송사 산하에 TV 와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스위스연방위원회(Swiss Federal Council)의 허가하에 설립된 민영방송이 있다.

한편, 스위스는 1984 년 현재 일간지와 비일간지를 포함한, 총 257 개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그 중 발행부수가 10 만이 넘는 신문은 7 개지 뿐이며, 5 만 허가 넘는 신문도 14 개지에 불과하다. 신문보급률은 1 천명에 402 부 정도이며, 지면은 24 면에서 28 면 정도이다. 스위스 신문은 ① 지방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신문의 형태도 다양하고 분산적이다. ② 내용이 보수적이며,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③ 유일하게 대중적이고 선정적인 Blick 지 이외에는 그 내용이 성실하고 진지하다. ④ 단순한 뉴스의 전달보다는 교육자의 역할이나 정보조언자의 역할이 더 강하다. ⑤ 신문의 65%가 독일어로, 25%가 불어로, 5%가 이태리어로 발행된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스위스 신문은 규모에 관계없이 정당과 강력하게 제휴한 신문이 많다. 그러나 정당이 신문을 소유한 경우는 드물고, 대개 개인소유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편집방침을 추구한다.

스위스는 특별한 언론관계법은 없으며, 다만 연방헌법 제 55 조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다른 조항과 기타 각종 법률 및 각 주의 조례와 경찰규칙 등에 의해 언론자유는 어느 정도 제약되나, 그 대부분은 언론자유의 남용에 국한하고 있다. 스위스 법률 중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은 악의적이고 조작된 중상모략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인에 대한 중상모략보다는 개인에 대한 중상모략에 더욱 엄하게 적용한다.

II. 신문평의회 설립 및 구성

스위스 언론인연맹 규칙 제 27 조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선언」 에 입각하여 언론인의 직업상 의무위반이나 언론인의 권리침해를 다루기 위해 신문평의회를 설치하였다.

신문평의회는 동일한 언어권에 속하지 않는 의장, 부의장 각 1 인과 16 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들 중 8 인 이 상 10 인 이 내는 독일어권에서, 적어도 5 인은 불어권에서, 3 인은 테시노주에서 선출된다. 신문평의회 위원은 언론인연맹의 현행 위원들만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연맹의 중앙위원회 위원은 평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문평의회 의장, 부의장, 위원들의 임기는 4 년이며 2 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그러나 신문평의회 의장은 퇴임 후에 어떠한 경우로든 새로운 임기로 의장이나, 위원에 선임될 수 있다. 평의회는 예비위원을 두며, 위원들은 그들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신문평의회 사무국은 의장, 부의장 및 그들과 동일한 언어권이 아닌 1 인의 평의회 위원으로 구성 된다.

III. 평의회 심의 절차

불만호소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 년 이상 경과된 사건은 직업윤리에 관한 평의회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불만호소건에 대해 사무국은 평의회의관할권, 신청기간 준수, 주장된 사실의 시효를 판단한다. 사무국은 불만호소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만호소인은 신청거부의 통지를 받은 후 10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불만호소가 신청되면 의장이나 권한을 위임 받은 부의장에 의해 평의회가 소집, 개최된다. 평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포함된 3 인, 5 인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이나 부의장이 위원을 지명한다. 3 인으로 구성된 경우 적어도 2 명의 위원은 피불만호소인과 같은 언어권에 속해야 하며, 5 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적어도 3 인의 위원이 그러해야 한다. 불만호소인이나 피불만호소인은 평의회 구성을 안 날로부터 10 일 내에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평의회 위원이 당사자이거나 그 대상인 경우 그 위원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평의회는 피불만호소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된 직업규칙의 조문을 기준으로 평결하고, 양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의결하며, 유리한 의견진술을 할 완전한 자유를 준다. 다만 일방이 불참하였을 경우 그것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의결은 방해 받지 아니한다.

신문평의회는 위법행위의 중요성 또는 재범이 될 특성을 고려하여, 평의회 견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회는 대상매체에 대해 평의회 견해를 수용할 것인지의 의견을 타진한다. 만일 대상매체가 평의회의 견해에 대해불만을 표시할 경우 평의회는 평의회의 견해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신문평의회의 견해는 매년 스위스 언론인연맹의 회원들에게 제출되는 보고서에 종합된다.

IV. 신문평의회 정관

제 1 장 평의회의 제도와 구성

제 1 조

1.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 선언」 또는 대표자총회에서 같은 목적으로 채택된 유사한 모든 다른 문헌은, 현행 규칙의 일부가 되어 이에 첨부된다.

2. FSJ(스위스 언론인 연맹)의 신문평의회는 언론인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다; 평의회는 연맹의 회원들에게 그들이 취해야 할 직업상의 행동 양식을 알려준다; 평의회는 직업윤리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결정한다.

제 2 조

1. 신문평의회는 같은 언어권에 속할 수 없는, 1 인의 의장과 1 인의 부의장 및 16 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2.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평의회 위원들은, 그 중 8 인 이상 10 인 이내는 독일어권에서, 적어도 5 인은 프랑스어권에서, 3 인은 데시노주에서 선출된다.

3. 직업명부에 등록된 FSJ 의 현역 위원들만이 신문평의회 피 선거권이 있다. 연맹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평의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RP(직업명부)의 현역 위원이 아니고 FSJ 의 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장직에 취임할 수 있다.

4. 신문평의회 사무국은 의장, 부의장 및 그들과 같은 언어권 출신이 아닌 1 인의 평의회 위원으로 구성 된다.

제 3 조

1. 신문평의회 의장과 위원들은 대표자 총회에서 4 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그들은 2 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2. 다만 신문평의회를 퇴임한 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임기로, 의장이나 단순한 위원에 선임될 수 있다.

3. 평의회는 예비위원을 둔다.

4. 평의회 위원들은 그들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 4 조

1. 신문평의회 사무국은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본 안건의 선결문제로 다룬다
-평의회 관할권(하기 제 9 조);

-평의회에 불만호소를 위한 기간의 준수(하기 제 11 조 1 항);

-주장된 사실의 시호(하기 제 11 조 2 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무국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한 이의신청은 신문평의회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한다. 또한 사무국은 절차나 기피문제에 관한 모든 결정에 관할권을 갖는다.

2. 신문평의회는 사건을 신청 받거나 직업윤리문제를 심문할 때, 의장이나 의장의 위임을 받은 부의장이 포함된 3 인 또는 5 인으로 구성된다. 의장이나 부의장은 배석을 지명한다. 신문평의회가 3 인으로 구성될 때에는 그 위원 중 적어도 2 인은 피고와 같은 언어권에 속하여야 한다. 5 인으로 구성될 때에는 위원 중 3 인이 그러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총회로 평결하게 되는 신문평의회는 전향에 규정된 구성으로 평결하기 위해 의장 또는 다수의 특별위원을 지명한다.

4. 피고가 사용하는 언어로 확정된 직업규칙의 조문이 기준이 된다.

제 5 조

신문평의회는 경우에 따라 FSJ의 외부인 또는 서기를 법률적 자문자로서, 번역자로서, 또한 평의회 서기로서 지명한다.

제 2 장 절 차

제 6 조

1. FSJ의 규칙 제 27 조에 따라, 신문평의회는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선언」에 입각하여, 언론인의 직업상의 의무 위반이나 언론인의 권리침해를 다룬다.

2. 또한 신문평의회는 직업에 대한 존엄성을 일반적으로 침해하거나 올바른 관행에 관계되는 사건들과 같이 직업윤리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다룬다. 평의회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견해를 통보한다.

제 7 조

평의회는 사실을 규명한다.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경중을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하기 제 16 조에서 규정된 처분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제재권한은 갖지 않는다.

제 8 조

위법행위를 한 자가 발행인의 지시로 행동하였거나 행동하였다고 하는 경우에, 평의회는 결정으로, 사건이 노동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된 노사 등수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에서 다루어지도록 FSJ의 중앙위원회에 기록을 송부한다.

제 9 조

1. 신문평의회는 법원이나 FSJ의 명예심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2. 그러나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을 때, 평의회는 직업윤리의 문제가 다루졌다고 판단하면 평의회 의견을 알릴 수 있다.

제 10 조

1. FSJ의 중앙위원회, 과, 노동공동체는 모든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FSJ의 구성원이건 아니건 신문평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문평의회는 의장에 의해 신청을 받는다.

제 11 조

1. 이해관계인은 청구하는 사실의 내용을 안 때로부터 60일 내에 신문평의회에 신청하여야한다.

2. 1년 이상 경과된 사건은 평의회가 전기 제 9 조 2 항의 의미로 직업윤리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닌 한 신청 되어질 수 없다.

제 12 조

1. 신문평의회는 회장이거나 그의 위임을 받은 부의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된다.

2. 평의회 위원 3인은 그 활동에 관계 있는 일반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전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신문평의회가 사건을 신청 받으면 의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부의장은 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의회를 소집한다.

제 14 조

1. 신문평의회는 당사자나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든지, 개최되는 평의회 구성을 안 날로부터 10 일 내에 평의회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이뤄지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신문평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신문평의회 사무국은 기피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2. 신문평의회 위원이 당사자이거나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동 위원은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5 조

1. 평의회는 당사자들의 참여 하에 의결을 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진술할 완전한 자유를 준다.

2. 다만 당사자중 일방이 결석했을 경우, 평의회가 그 결석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은 방해 받지 않는다.

3. 평의회는 언제든지 제 3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또한, 평의회는 스스로 절차를 결정한다.

제 16 조

1. 신문평의회는 위법행위의 중요성 또는 재범이 된 특성을 고려하여 평의회 견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2. 이 때에 신문평의회는 위법행위가 저질러질 때 그 경로가 된 보도매체(들)에게 동 매체(들)가 전향의 견해를 지체 없이 그 전부에 대해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다.

3. 신문평의회에 의해 만족스럽다고 판단 되어지는 조건으로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평의회는 평의회 견해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 17 조

1. 신문평의회 견해는 매년 FSJ 의 구성원들에게 제출되는 보고서에 종합된다.

2. 보고서의 내용은 전향의 구성원들에게 그들 직업의 좋은 관행과 그들 권리의 존엄성을 깨우치는 데에 사용된다; 그것은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향후 출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18 조

신문평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정한다.

제 19 조

신문평의회는 FSJ 의 중앙금고, 전기 제 18 조의 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기금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운영자금을 처리한다. 외부기금은 제공 처를 밝힘이 없이 FSJ 의 중앙위원회에 납부되고, 동 위원회는 이를 평의회에 전달한다.

제 20 조

신문평의회는 매년 FSJ 의 대표자 총회에 그 활동과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21 조

대표자 총회는 현행 규칙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다.

- 1984. 6. 29. 대표자 총회에서 채택된다. -